

2012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개요

- 일 시 : 2012. 2. 7(화) 16:00~22:10
- 장 소 : 호암교수회관 메이플룸
- 참 석 : 총 9명 참석
 - 조춘(위원장), 김인수(부위원장), 박영래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사무국장, 학생위원 3인

2. 회의내용

- 보 고
 - 2012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자료
 - 발표자 : 예산과장
- 회의진행 및 주요 심의내용
 - 등록금심의위원 9인중 학교측 당연직 위원 3인, 학생위원 3인, 학교측에서 선정한 1인, 학생위원 3인이 협의하여 선정한 1인, 학교측과 학생위원측이 공동 선정한 위원 1인이 전원 참석함에 따라 회의 개최.
 -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의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정한다는 학칙의 규정에 따라 외부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로 전원 동의하고 선출함.
 - 예산과장의 심의자료 설명 후, 심의자료를 기초로 예산편성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외부위원과 학생위원측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많은 질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학교측은 상세히 설명(특히 학생위원 등은 대외교류사업, 외국인학생지원사업, 장학제도 및 금액, 도서관 장서확충사업 등의 여러 사업에 많은 질의를 함).
 - 학교측에서는 등록금 동결을 학생측은 인하를 원하고 있으므로 등록금을 동결할 것인지 인하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, 그간 서울대가 등록금채정에 있어 물가 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3년간 동결정책을 유지한 점으로 보아 올해도 등록금 동결이 타당하나, 최근의 반값 등록금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인하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았음.
 - 법인화의 시행초기에 찬·반의 쟁점이 등록금 인상 등 하나의 요인이었기 때문에 출범 첫째 법인화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5% 이상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 개진됨.
 - 이에 대해 학교측은 등록금 동결을 제안 했지만, 사회의 경제적 불황상황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완화 필요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5% 인하가 되면 연간 물가상승률 4~5%를 감안할 때 10% 정도의 실질적인 인하가 됨을 설명.
 - 학생위원측은 학내·외 분위기와 또한 서울대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하는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되므로 등록금의 5% 인하를 요구함.

- 학교측은 학부과정의 등록금 인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, 대학원과정은 학사 과정과 달리 진학결정이 선택의 문제이므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.
- 이에 대해 일부 학생위원은 대학원 등록금도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므로 학부가 인하되면 대학원도 인하되어야 함을 강조.
- 학교측의 각 대학원마다 교육과 연구여건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수혜율을 높여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, 일부 학생위원은 각 대학원마다 교육 및 연구여건이 달라 장학금 수혜율을 높이는 것과 등록금 인하는 별개 사항임을 강조.
- 이에 학부생은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고 대학원생은 선택한 과정이므로 학부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하며 타 대학의 경우도 인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학부생은 인하하고 대학원생은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다수였음.
- 학교측은 등록금 인하에 따른 세입감소에 대해 발전기금 모금확충, 한국장학재단 지원 확보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려 하며, 또한 교육과 연구에 직결되는 세출예산은 삭감하지 않음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자 함.
- 위원장은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학부는 5%를 인하하고, 대학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되 대학원 여건에 따라 장학금 등의 수혜율을 높이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여 투표결과 8명 찬성, 1명 반대로 의결됨.

3. 심의결과

-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조춘 변호사, 부위원장 김인수 회계사를 선출함.
- 2012학년도 학부 수업료는 전년도 기준액의 5%를 인하함.
- 2012학년도 대학원 수업료는 전년도 기준액으로 동결하고, 추후 각 대학원교육 및 연구 여건에 따라 장학금 등을 확충하여 실질적인 금전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.

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과 동시행령 제4조의3에 의거 학생 심의위원 인적사항은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기로 함.